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2. 30). / (총 23	3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양 정 석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과 장	윤 정 환		044-202-1831
인력관리팀	담 당 자	이 수 진		044-202-1843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시설 대응팀	팀 장 담 당 자	민 영 신 윤 동 빈 유 정 현 김 욱	전 화	044-202-3530 044-202-2474 044-202-3517 044-202-3864
공정거래위원회	과 장	류 용 래		044-200-4430
특수거래과	담 당 자	배 문 성		044-200-4438
공정거래위원회	과 장	신 동 열		044-200-4405
소비자정책과	담 당 자	김 현 우		044-200-4411
보건복지부	과 장	백 경 순		044-202-2630
혈액장기정책과	담 당 자	김 현 아		044-202-26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현장점검에 소극적이거나, 민원부담 등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국민 모두가 확산세를 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행안부에게 각 지자체가 방역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대본에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지난 주말에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아직도 있으며, 성탄절 당일 다과 모임을 가졌던 교회에서는 20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온 경우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 각 지자체와 경찰청에게 방역수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즉각적인 집합금지 등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도 적극 행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12월 30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24.~12.3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7,06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008.9명이다.
 -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2.30.): 1,567명
 - 수도권 환자 700명, 비수도권 300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4.~12.30.)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08.6명	96명	37.9명	65.6명	63.7명	22.4명	14.7명
60대 이상	214.4명	24.9명	14.4명	21명	22.9명	10.3명	1.9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 (12.29. 9시 기준)	120개	15개	16개	30개	25개	4개	7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 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건 이상을 검사하였으며,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도 41,154건을 검사하는 등 10만 건이 넘는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였다.
 -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 152**개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30.) **총 593,756건**을 검사하여 **1,567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 서울 63개소, 경기 76개소, 인천 13개소
 - 임시 선별검사소의 성과가 큰 만큼 운영 기간을 기존 1월 3일 에서 2주 연장할 예정이다.











-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12.13.) 이후 **차질없이 병상을 확보**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병상 여력을 회복**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한때 500명 넘게 있었으나, 현재 **23명(12.30.)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 >

구분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일 이상 대기자(명)	248	183	185	179	158	96	63	57	23

-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생활치료 센터는 33개소 8,063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34개소 2,144병상, (준)중환자 병상은 57개소 582병상을 확충하였다.
 -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총 69개소 12,563병상을 확보(12.29.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6.3%로 6,7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6,389**병상을 확보**(12.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3%로 **1,9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환자병상은 전국 217병상, 수도권 120병상이 남아 있다.
 - 특히,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현재 562병상을 보유하고, 207 병상이 남아 있다. 전담치료병상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운영하던 병상은 12월 31일까지만 통계 관리하고, 이후에는 전담치료병상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29.기준) >

_	구분	생활치	료센터	감염병 7	전담병원	중환지	다병상
-	ΓŒ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7	전국	12,563	6,741	6,389	1,959	834	217
수	-도권	10,260	5,635	2,780	638	529	120
	서울	4,460	2,260	1,463	252	290	47
	경기	3112	1,732	925	229	180	58
	인천	540	311	392	157	59	15
7	강원	164	36	197	45	20	4
충	·청권	482	217	679	171	57	15
호	담권	304	144	708	405	52	16
경북권		618	183	873	275	76	30
경	 남권	735	478	839	313	90	25
7	제주	-	-	313	112	10	7

- □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6,116개소**, **205,601명을 검사**하여 **30명의 환자를 확인**하였다.
 - 또한, 집단감염 발생 이후 현장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역학조사와 환자 분류, 의료자원 동원**을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 오늘(12.30.)부터 중수본에 **긴급현장대응팀**(3개)을 **구성·운영**하며, 요양병원·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방대본 현장대응팀과 합동 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고령자가 많고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시설은 초기에 빠른 개입과 조치가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 코로나19 대응 간호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간호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 병상 확충, 임시검사소설치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수요 급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격무 및 피로감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간호인력의 업무부담 경감과 사기진작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늘어나는 간호인력 수요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효율화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적정 간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12월 10일(목) 이후 4,000명 이상 지 원자를 모집하였으며, 앞으로 5천 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 □ 현장근무 간호사들의 **처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기진작방안** 추진과 교육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근무 강도가 높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환자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관련 개선된 건강보험 수가 등이 의료진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될 수 있도록 일선 병원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중증환자 간호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간호사 양성을 확대 추진**하고, **파견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등 **사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3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로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반전시키기 위해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모임·여행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례문화진흥원 등과 합동으로 **285개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방역관리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 요양병원(107), 장기요양기관(16), 정신의료기관(20), 목욕시설(8), 사회복지시설(63), 장례식장(25), 봉안시설(9), 이·미용시설(10), 숙박시설(10), 약국(8), 산후조리원(9)
 - **환자 발생상황**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방역 관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취약성을 고려하여 **종사자 선제검사 이행 등 방역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특히 최근 주요 감염경로로 확인된 **종사 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방역책임자(기관운영자) 면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목욕시설, 장례식장·봉안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 * (목욕시설) 수도권 사우나시설 운영 금지 및 시설 내 음식물섭취 금지 (장례식장·봉안시설) 이용 인원 제한 및 식당 칸막이 설치 등 (숙박시설) 시설 주관 파티 주최 금지 등
- 양로·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출입자 관리 현황**, 거리 **두기 단계별 운영계획** 등과 함께 동절기 소방·전기·가스·시설 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 □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를 방문을 하는 등 위약금 분쟁을 원활 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의 **방문·다단계판매 업체 33개소**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방문판매법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업체 **1개소를 고발**하였으며, 거리 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였다.
 - * '20.6월부터 현재까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발 7건, 경찰 수사 의뢰 10건 조치 (지자체의 조치사항은 제외)
 - 또한, 지자체와 경찰청과 협력하여 **노인층의 불법 방문판매업체** 방문 자제와 불법 방문판매 신고 등도 홍보하고 있다.
 - 최근 숙박업 관련 상담과 예약취소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 감면기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 * 위약금 면제. 예약취소 간소화, 예약취소 시 대체숙박 제공 안내 등













4 이동량 분석 결과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 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2월 26일~12월 27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3,599천 건,** 비수도권 **25,054천** 건, 전국은 **48,653**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3,599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4.2**%(12,291천 건), **직전 주말**(12월 19일~ 12월 20일) 대비 **3.4**%(827천 건) **감소**한 것이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5,054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4.3**%(13,089천 건), **직전 주말**(12월 19일~ 12월 20일) 대비 **1.4**%(366천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 -	(11.9~11.15)	(11.16~11.22)	(1123~1129)	(11.30~12.6)	(12.7~12.13)	(12.14~12.20)	(1221~1227)
거	리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수도권 1.5단계 (11.19~)	수도권 2단계 바수도권 1.5단계 (11.24~)	수도권 강화된 2단계, 바수도권 1.5단계 (12.1~)	2단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2.8~)	
주	ᄉᆮᅬ	35,890천건	32,135천건	27,670천건	27,825천건	24,488천건	24,426천건	23,599천건
말이	•	직전 주 대비 증감	▲10.4%	▲13.9%	0.6%	▲12%	▲0.2%	▲3.4%
등 량	비수도 권	38,143천건	33,734천건	30,193천건	28,688천건	26,737천건	25,420천건	25,054천건
Õ		직전 주 대비 증감	▲11.6%	▲10.5%	▲ 5.0%	▲6.8 %	▲4.9%	▲1.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께 감사를 표하고, 강화된 거리 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며, 긴장감을 갖고 조금 더 노력을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충북)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63개소 운영하여 그간 총 316,334건을 검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847명의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였다.
 - 이와 함께 12월 23일부터 물류업·콜센터·대중교통 종사자 등 3밀 환경이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검사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찾아가 3,249건을 검사하였으며, 1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병상 추가 확보에 따른 의료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며, 보건소 등의 수요조사를 거쳐 순차적 배치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환자의 치료·격리를 위한 전담병원 등 1,054병상, 생활 치료센터 3,112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경기도의료원 내에 중등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배치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251명을 모집하여 의료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배치하였다.











- 한편,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76개소** 운영 중이며, 그간 233,442명을 검사하여 576건을 확인하였다.
- 충청북도는 지난 1주일(12.24.~12.30.) 동안 **총 247명, 1일 평균 35.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58개소(기존 31개소)로 확대·운영**하여, 12월 18일 이후 102,256명을 검사하고 44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이와 함께 거점전담병원을 2개소, 157병상을 지정·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연말연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가두캠페인,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한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식당·카페, 숙박시설, 관광명소, 상점·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6 헌혈 참여 감사 및 지속적인 헌혈 독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감소 등으로 인해 12월 18일(금) 이후 2일분 수준까지 감소했던 **혈액 보유량이 12월** 29일(화) 기준 5일분으로* 적정수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 * 혈액보유량 : (12.18) 2.7일분→ (12.29) 5.0일분 (1일분 = 약 5,700명 헌혈분)
 - ** 「혈액위기대응 매뉴얼」혈액보유량 단계
 - ① 5일분 이상: 적정 ② 3일 이상~5일 미만: 관심 ③ 2일 이상~3일 미만: 주의
 - ④ 1일 이상~2일 미만: 경계 ⑤1일 미만: 심각
 -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금)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문자발송 전후로 일평균 개인 헌혈자수가 약 44% 증가하고 대한적십자사 사전 헌혈예약이 약 21% 증가*하였다.
 - * (일평균 개인헌혈자수) 3639명(12.11~12.17) → 5240명(12.18~12.24) (일평균 사전 헌혈예약수) 3959건(12.11~12.17) → 4796건(12.18~12.24)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정부도 **안전한 채혈환경 조성과 혈액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29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7196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21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298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57명 감소하였다.
 - 어제(12.2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계도하 였다.
- □ 12월 29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3,122개소, ▲이·미용업 1,687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561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04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7개반, 95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6,013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31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 3.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u>▶ 집합금지</u>
눈썰매장)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학원·교습소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괴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괴정은 허용
(독서실 제외)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u>▶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u> <u>▶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u> <u>▶ 집객행사 금지</u> <u>▶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u>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u>▶ 최대한 폐쇄</u>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0017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지 당군단에 등 지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02 "0-2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21 -60060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u>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u>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식당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² 이상)
70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
	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 집합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一/ iō, ōōō, 正型(iō)	1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 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u>▶ 집합금지</u>				
국공립시설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 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 이용인원 10%이내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직장근무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워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첚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 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